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017

발의연월일: 2025. 3. 18.

발 의 자:남인순・윤종군・박지원

박홍근 • 전진숙 • 김남근

허종식 • 박희승 • 조정식

전용기 · 정성호 · 김준혁

윤후덕 · 송옥주 · 민병덕

김기표 의원(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립요양병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법인·단체·개인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대부분의 공립요양병원은 민간 위탁계약을 통해 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수탁자 중 적자 누적으로 인해 운영을 중도 포기하거나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공립요양병원의 만성적인 적자구조로 인해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운 수탁자를 찾지 못해 병원이 폐업하는 사례까지도 발생하고 있음.

또한, 수탁자 대부분은 최초 계약 시 운영에 필요한 부지·건물 등을 기부채납하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예상되는 운영 수익에 대한 반대급부로 행해지는 것임. 그런데 수탁자의 대부분이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현행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련법 어디에도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수탁자에게 지나치게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뿐만 아니라 공립요양병원은 치매관리사업 수행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지원 근거가 없는 실정임.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공립요양병원 운영 위탁계약 종료 시 비용을 정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립요양병원에 대한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립요양병원 운영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공공보건의료 체계를 공고히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3제9항·제10항 신설 및 제18조).

법률 제 호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치매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에 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탁기간의 만료 또는 위탁계약의 해지 등으로 위탁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제7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위탁계약이 해지되는 경우는 제외하되, 제7항제2호 중 공립요양병원의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한 부도, 파산, 해산으로 위탁계약이 해지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수탁자가 기부채납한 재산의 규모, 위탁기간동안 공립요양병원의 운영을 위해 수탁자가 지출한 비용 등 수탁자가 공립요양병원의 설치・운영에 기여한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 ① 제9항에 따른 정산의 방법·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제1항제1호의2 중 "제16조의2"를 "제16조의2, 제16조의3"으로, "광역치매센터"를 "광역치매센터, 공립요양병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6조의3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위탁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위탁계약 갱신을 결정하는 경우도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의3(공립요양병원의 설치	제16조의3(공립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 ① ~ ⑧ (생 략)	및 운영) ① ~ ⑧ (현행과 같
	<u>수</u>)
<u><신 설></u>	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탁
	기간의 만료 또는 위탁계약의
	해지 등으로 위탁계약이 종료
	되는 경우(제7항제1호부터 제4
	호까지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
	지되는 경우는 제외하되, 제7항
	제2호 중 공립요양병원의 운영
	으로 인하여 발생한 부도, 파
	산, 해산으로 위탁계약이 해지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수탁자
	가 기부채납한 재산의 규모, 위
	탁기간 동안 공립요양병원의
	운영을 위해 수탁자가 지출한
	비용 등 수탁자가 공립요양병
	원의 설치·운영에 기여한 정
	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
	산하여야 한다.
<u><신 설></u>	⑩ 제9항에 따른 정산의 방법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
	<u>한다.</u>

제18조(비용의 지원) ① 국가와 지 기방자치단체는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생략)

1의2. 제16조, <u>제16조의2</u> 및 제 17조에 따른 중앙치매센터, <u>광역치매센터</u> 및 치매안심센 터의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

1의3. (생략) 2. ~ 4. (생략) ② (생략)

제18조(비용의 지원) ①
1. (현행과 같음)
1의2 <u>제16</u> 조의2, 제16조
<u>9</u>]3
광역치매센터, 공립요양병원-
1의3. (현행과 같음)
2.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